

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(제30조 관련)

1.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가. 목적
 - 나. 안전관리자의 직무·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
 - 다.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
 - 라.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·조치·훈련에 관한 사항
 - 마. 검사장비에 관한 사항
 - 바. 수소용품의 공정검사·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
 - 사. 하청업자 등 외부인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
 - 아.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
 - 자. 그 밖에 안전관리의 유지에 관한 사항
2.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 작성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